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기획예산과)

의안번호	제 56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2. 11. 14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조례의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에 장애인체육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. 12. 31.에서 2027. 12. 31.로 5년 연장, 한옥보전지원기금은 폐지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체육기금 존속기한 연장
- 나. 한옥보전지원기금 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9조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사항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문화체육과 : 장애인체육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
 - 2) 건 축 과 : 한옥보전지원기금 폐지에 관한 사항
- 라. 입법예고 : 2022. 9. 29. ~ 2022. 10. 19. (20일간), 의견제출 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기금¹⁾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, 실적이 부진한 한옥보전지원기금²⁾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,
- 2018년 설치된 장애인체육기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, 체육활동지원, 체육활동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7억1,591만원으로,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9조(장애인체육기금) ①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규정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, 체육활동 지원, 체육활동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 전입금
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그 밖의 잡수입 등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각 사업들은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
2.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및 관련 체육시설 확충
3. 장애인 재활체육 사업
4. 장애인 체육욕구 조사 사업
5. 그 밖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5조(한옥보전지원기금)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있는 등록한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옥보전지원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전입금
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그 밖의 잡수입 등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비한옥에서 한옥 신축 시 보조지원
2. 한옥 외관, 내부 수선 시 보조 또는 용자지원
3. 한옥의 부분수선 시 보조지원

- 장애인체육기금은 법정이 아닌 임의 기금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제2항 ‘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’ 고 규정되어 있으며,
- 같은 법 제4조제3항 ‘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’ 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하려는 것임.
- 한옥보전지원기금은 2012년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보조, 용자 지원을 위해 설치되 었으나, 한옥수선 등 보조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시행중이고, 구지원금액이 시 지원금의 약 1/3 수준이며 이중지원 불가로, 서 울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며, 최근 3년 간 보조금을 지 원받은 성북구 소재 한옥 19가구 중 1가구(5.26%)만이 성북구에 지원 신청하였고, 18건(94.74%)은 서울시에 지원 신청하는 등 실 적이 부진하여 한옥보전지원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.